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2025.1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Contents



0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4

02

기타교육(자격취득교육)

8

0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9

04

참고사항

11

05

기타안내사항

12

[붙임1] 화학물질관리법 규정 안내

12

[붙임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FAQ

13

[붙임3]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결과보고

21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목적 및 근거

교육 목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교육 기관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보전원,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6의3]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주관 기관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매 2년마다 8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2년마다 8시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화학물질안전원
4. 종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	매년 2시간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자체교육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7조

구분	교육 대상 및 시간	주관 기관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대상 : 기술인력 교육 시간 : 매 2년마다 16시간 이수 시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또는 1년 이내) 교육 방법 : 대면교육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시간 : (일반) 매 2년마다 16시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매 2년마다 8시간 이수 시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또는 1년 이내) 교육 방법 : 대면교육	
취급담당자	교육 대상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수급인이 고용한 자로 직접 취급자 교육 시간 : 16시간 이수 시기 : 업무 수행 전(2년마다 보수교육) 교육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 ① 16시간 대면교육 ② 8시간 대면교육 + 8시간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교육 시간 : 8시간 이수 시기 : 업무 수행 전(2년마다 보수교육) 교육 방법 : 대면교육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교육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담당자 교육 시간 : 16시간 이수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과정 또는 안전원장이 정하는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총합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2조 참고	화학물질안전원
종사자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 교육 시간 : 2시간 이수 시기 : 1년마다 보수교육 교육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 ①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주관한 화학사고 대비·대응훈련 참가 ④ 사업장 자체 온라인 교육(사전에 안전원 승인 필요)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자체교육



참고사항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비고 1.)

[취급담당자 - 운반하는 자 및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의 취급담당자는 제외]

- ※ 취급담당자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으로 일부 교육 시간 이수 가능
- ※ 단, 온라인교육과 나누어 8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나머지 8시간 교육은 같은 해에 각각 다른 날에 이수해야 인정 가능.

1)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자(운반하는 자 제외) 아래 중 택1

- ① 취급전 16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② 취급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취급전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 ③ 취급전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 취급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④ 취급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취급후 3개월 이내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2)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자(운반하는 자 제외) 아래 중 택1

- ① 취급전 16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② 취급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취급전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 ③ 취급전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 취급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운반하는 자 제외)중 2년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수한 경우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은 면제되며 나머지 8시간은 대면교육으로 이수하여야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취급담당자 - 운반하는 자 및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8시간(업무 수행 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불가능.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중복 이수 관련 안내]

※ 2개 이상의 안전교육 대상의 경우 상위 1개 교육 과정만 이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담당자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과정을 이수
- 취급담당자 및 운반하는 자인 경우에는 취급담당자 교육 과정을 이수

[종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종사자 교육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s://edunics.mcee.go.kr>)을 통해 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2. 기타교육(자격취득교육)

☑ 대상 및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7조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주관 기관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술인력 자격취득(기본)	24시간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자격취득(경력)	32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3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기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따라 신고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8시간	

☑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구분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기관
기술인력	기본과정	교육 대상 :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미만인 자 중 학력(석사 이상) 또는 자격(기사·산업기사·기능사)을 갖춘 사람 -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 시간 : 24시간 이수 시기 : 선임 전 -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이 5년 미만인 대상자는 기본과정 수료 후 경력 과정을 해당연도 안에 이수해야 교육 이수가 완료됨 ※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의 인정 기한 2028. 12. 31.	화학물질안전원
	경력과정	교육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이상인 자 교육 시간 : 32시간 이수 시기 : 선임 전 ※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의 인정 기한 2028. 12. 3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외 (시약판매업 포함)	교육 대상 :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 32시간 이수 시기 : 선임 전 교육 방법 : 대면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기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교육 대상 :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 8시간 이수 시기 : 선임 전 교육 방법 : 대면교육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선임
신고 의무	선임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음
대리자 지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선임 절차	신고《신고인》→ 접수《유역·지방환경청》→ 검토《유역·지방환경청》→ 신고증 발급《유역·지방환경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운반업	비 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책임자	1명		1명	총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점검원	연간 취급량	점검원 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단, 20대 이하의 제외)	
		천톤 미만	1명		
		천톤 이상 만톤 미만	2명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	3명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	4명		
		백만톤 이상	5명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중 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연간 취급량 등에 따라 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 종사자수에 따른 점검원 추가선임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사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종사자 5,000명당 1명 추가

※ 아래의 사업장은 책임자 1인을 선임(점검원 선임 불필요)

-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다만, 법 제29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예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운반업 외) 선임 예시					
업종	연간 취급량(톤)	종사자수 (명)	책임자	점검원	선임인원
제조업	5,000	100	1	2(2+0)	3
	120,000	600	1	5(4+1)	6
	15,000	1,200	1	5(3+2)	6
	1,500,000	6,100	1	17(5+12)	18
사용업	5,000	100	1	2(2+0)	3
	120,000	5,000	1	5(4+1)	6
판매업	5,000	1,200	1	2(2+0)	3
	120,000	6,100	1	5(4+1)	6

※ 연간취급량에 따른 점검원 선임 시 취급량은 연간취급예정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취급량이 연간취급예정량을 초과하여 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점검원을 충원하여야 함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예시						
운반차량 수	20대 이하	21~39대	40~59대	60~79대	80~99대	비고
선임인원(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책임자 및 점검원은 각각 선임
책임자	1명	1명	1명	1명	1명	
점검원	0명	1명	2명	3명	4명	

〈예시〉 :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이면서 종업원수 10명 미만 운반업 : 책임자 1인을 선임

☑ 기술인력 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6]

목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선임
신고 의무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한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 기술인력(1인 이상)을 갖추어 업종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위반에 대한 조치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	240만원	300만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안내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사)한국화학안전협회	031-410-2992	https://edu.chemsafe.or.kr/main/main.html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02-852-2291	https://hrd.keef.or.kr/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40-9819	https://www.hoseoedu.kr/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691~4	https://edu.kcma.or.kr/main/main.asp
한국환경보전원	02-3407-1500	https://www.kepaedu.or.kr/cse/main.do
특화교육기관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0-5259	https://envsafe.ksia.or.kr/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중 방문 교육 신청 안내

- 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각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전화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 교육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고

5. 기타안내사항

☑ [붙임1] 화학물질관리법 규정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시행규칙 별표6의3)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유해화학물질 별 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2년마다 8시간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비 고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붙임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FAQ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Q1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과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32시간 교육 과정이고,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된 후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16시간 교육과정입니다.

Q2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또는 2년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안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자격취득일	주관 기관
2년 이내 선임 → 2년 이내 안전교육 이수	예시) 2024. 2월에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하고, 2025. 9. 21일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 최초 안전교육은 2027. 9. 20일까지 → 다음 안전교육은 2029. 12. 31일까지 받아야 함
2년 경과 후 선임 → 1년 이내 안전교육 이수	예시) 2023. 2월에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하고, 2025. 9. 21일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 최초 안전교육은 2026. 9. 20일까지 → 다음 안전교육은 2028.12. 31일까지 받아야 함

Q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의 교육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의 신청조건은 3가지가 있으며 각 조건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분	구비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화학 관련 교과목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과명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3.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Q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국가기술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 제4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참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안전	가스	화공	화약류제조	환경
화공	위험물	정밀화학	산업안전	위험물
가스	표면처리	화약류제조	수질환경	가스
대기관리		환경위해관리	대기환경	화학분석
수질관리		화학분석	폐기물처리	표면처리
폐기물처리		산업안전	위험물	
산업위생관리		가스	가스	
표면처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표면처리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취급담당자 과정



Q1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를 말합니다. 단, 자동공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로부터 고용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취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16시간/2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해당 사례

1.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서 하역하는 지게차 운전자
2. 비상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등을 긴급 수리하는 직원
3. 유해화학물질 설비를 육안으로 순찰·점검 시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잉크 크리너, 솔벤트를 직접 취급하는 직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미해당 사례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 화학물질 포장 등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지만, 층 작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층에서 일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
3.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펌프나 설비를 수리하기 전 퍼지 등을 통해 확실히 세척한 후 작업하는 직원
4. 유해화학물질 설비를 육안으로 순찰·점검 시 인체에 유해화학물질이 직접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Q2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관리를 받는 연구실 직원은 취급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부터 고용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나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는 취급담당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3

사업장에서 관리자로 선임되어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급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면 취급담당자 과정도 이수해야 하나요?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을, 취급담당자이면서 운반자인 경우에는 취급담당자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Q4

‘운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운반자’란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자를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및 [별표 6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8시간(취급담당자 온라인교육 대체 불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상하차 업무를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 담당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운반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과정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수하거나 관리자과정 등 상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운반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5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고 내릴 때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나 작업자 외에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또는 점검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종사자 교육

Q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 담당자,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보수업체 근로자, 인증 심사원 등)

Q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교육 내용 및 결과, 이수자 명단, 강사 이력서’의 3가지 사항을 증빙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Q3

화학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예방·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대응·대피 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영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주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시 조치 및 대응방법, 개인 보호구 사용법, 방제 장비 사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훈련 사진, 참석자 서명 자료 등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하며, 참석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Q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로서 취급담당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종사자 교육도 이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취급담당자 교육을 받으셨다면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종사자 교육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누리집(<https://edunics.mcee.go.kr>) 교육실적 보고 메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해 1월31일까지 교육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동일 연도 중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Q1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영업신고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운반자,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교육 등은 각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온라인 교육 및 종사자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s://edunics.mce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종사자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짜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의 유효기한은 취급담당자 교육은 2년, 종사자 교육은 1년으로써 연도 말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5월에 취급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2027년 12월 말까지 다음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에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2026년 12월 말까지 종사자 교육을 다시 이수하시면 됩니다.

Q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면제 대상이라면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영업허가 등 여부 및 운반량과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새로 지정된 담당자는 언제까지 교육받아야 하나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이행하는 담당자(관리자 및 취급담당자)는 정기 안전교육 이외에 추가로 16시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행을 위한 교육은 이행과정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포함된 계획에 맞추어 인정되는 전문교육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Q6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이란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등 취급시설이 없어 화학물질을 직접 보관·저장 또는 운반 등 취급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합니다.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인을 선임해야 하며,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을 이수한 후 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Q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들으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 면제 되나요?**

면제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비고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 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입니다.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8

**기술인력 기준 중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
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에서 화학분야는 없나요?**

기술인력 중 석사 학위의 화공분야에는 화학분야, 고분자 화학, 공업화학, 재료공학(신소재공학, 금속공학 포함)은 포함됩니다.

☑ [붙임3]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결과보고

교육 결과보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종사자 교육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s://edunics.mcee.go.kr>)을 통해 보고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교육일시, 장소, 대상 인원 등)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사업장 자체보관 자료]

- 안전교육결과, 유해화학물질 신고증
-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자료 출처 포함)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의 종사자 교육결과 보고 서식을 다운 받음
- 교육유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첨부 엑셀 서식에 이수자 명단을 작성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스캔파일) 첨부·제출(해당연도 12.1. 부터 다음연도 1.31. 까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보고 절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

종사자 교육 결과 보고

영 업 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보고 사항

교육구분	해당여부 ○표시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인원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비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의한 집합교육	[]	년 월 일, ○○○	명	시간	(예시) • 화학사고 발생 징후 인지 및 사고회피 방법 • 화학사고 발생신고 및 사고 상황전파 방법 • 인체 노출시 응급조치 방법	
사업장 온라인교육시스템	[]	년 월 일, ○○○	명	시간	상동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교육시스템	[]	-	명	2시간	-	
화학물질안전원 외 안전교육기관	[]	년 월 일, ○○○	명	시간	상동	교육기관명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직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비 고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주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필요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교육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법 제64조제2항제4호, 시행령 별표2 참조).

교육 이수자 명단

관리자에 의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

[illegible]

사업장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illegible]

안전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자 명단(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No	회사명	부서	직급	이름	교육과정명	수료증번호	수료일자	비고 (공강)	협력체 여부	협력업체명
1	화학물질 안전원	서비스 사업부	사원	박세피	종사자교육	제E2025- A-B7731호	2025-06-01			
2	화학물질 안전원	연구개발과	대리	김철수	종사자교육	제E2025- A-C4784호	2025-11-01			

안전원 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illegible]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2025.12.



기후에너지환경부